

[별표 6] <개정 2007.4.2>

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(관세의 기본세율이
무세인 품목)의 분류표(제13조관련)

구 분	관세율표번호	품 명
1. 산 동물	0102 0103 0105	①종 우 ②종 돈 ③종 계
2. 다른 류에 분 류되지 아니한 동물성생산물	0511	①소의 정액 ②동물의 정액(소의 것을 제외한다) ③수정란
3. 식용의 채소· 뿌리 및 괴경	0701	종자용감자
4. 곡 물		
5. 채유용에 적합 한 종자와 과 실, 각종의 종 자와 과실, 공 업용 또는 의 약용의 식물 및 짚과 사료 용식물	1005 1209	종자용 옥수수 과종용의 종자·과실 및 포자
6. 의료용품	3001 3002	①피부 및 뼈(이식용의 것에 한한다) ②면역혈청 ③혈청과 혈장(합성의 것을 제외한다) ④기타(HSK번호 제3002, 10. 9090호) ⑤인 혈 ⑥동물의 피(치료용·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)
7. 인쇄서적·신 문·회화 및 기 타의 인쇄물, 수제문서·타이 프문서 및 도 면	4901 4902 4903	①인쇄서적·소책자·리이플렛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(단매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 ②신문·잡지 및 정기간행물(그림이 있는 것이 거나 광고선전물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) ③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

	4904	④악보(인쇄 또는 수제의 것으로서 제본되었거나 그림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
	4905	⑤지도·해도 또는 이와 유사한 차트(제본한 것·벽걸이용의 것·지형도 및 지구의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에 한한다)
	4906	⑥설계도와 도안(건축용·공학용·공업용·상업용·지형학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의 원도에 한한다), 육필책자 및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한 것 및 카본복사의 것
	4907	⑦우표·수입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(해당국에서 통용 또는 발행된 것으로서 사용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, 스탬프를 압인한 지, 지폐·수표·채권·주식 또는 주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
	4911	⑧광고선전물·상업용 카다록 및 이와 유사한 것 ⑨서화·디자인 및 사진을 제외한 기타 인쇄물(인쇄된 설계도와 도안을 포함한다)
8. 원자로 및 그 부분품	8401	원자로, 방사선을 조사하지 아니한 원자로용 연료체(카아트리지) 및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
8의2. 차량·항공기·선박과 수송기 관련품	8609	컨테이너(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,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에 한한다)
9.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	8710	자주식의 전차와 기타의 장갑차량(무기의 장비여부를 불문한다) 및 이들의 부분품
10.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	8802	①기타의 항공기(헬리콥터를 제외한다), 우주선(인공위성을 포함한다) 및 우주선운반로켓트
	8803	②관세율표 제8801호 또는 제8802호의 부분품
	8804	③로토슈트 및 로토슈트의 부분품과 부속품

11. 선박과 수상 구조물	8805	④항공기발진장치, 갑판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, 지상비행훈련장치 및 이들의 부분품(군·경찰용의 것에 한한다)
	8901	①순항선·유람선·페리보트·화물선·부선 및 이와 유사한 선박(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용에 한한다) 중 수리선박
	8902	②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의 선박 중 수리선박
	8906	③군함을 제외한 기타의 선박(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) 중 수리선박
12. 무기·총포탄 및 이들의 부 분품과 부속품	8907	④군함(수리선박을 포함한다)
	9301	①군용무기(리볼버·피스톨과 관세율표 제9307호의 무기를 제외한다)
	9302	②리볼버와 피스톨(관세율표 제9303호 또는 제9304호의 것을 제외한다)
	9305	③연발권총 또는 단발권총(관세율표 제9302호의 것)의 부분품과 부속품
		④군용화기(관세율표 제9301호의 것)의 부분품과 부속품
	9306	⑤폭탄·유탄·어뢰·지뢰·미사일 및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, 탄약·기타 총포탄·탄두와 이들의 부분품(산탄알 및 탄약안에 충전되는 와드를 포함한다)
13. 예술품·수집 품	9307	⑥검류·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집
	9701	①회화·덧상과 파스텔(육필한 것에 한하며, 관세율표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을 제외한다) 및 콜라쥬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
	9702	②오리지널판화·인쇄화 및 석판화
	9703	③오리지널 조각과 조상(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)
	9706	④골동품

주 : 제6호의 품명란의 "HSK번호"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번호를 말한다.